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단90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D

피 고 E

소송대리인 F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G의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G 사이에 2018. 8.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G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G의 2/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8. 8. 접수제126819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2. 6. 25.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2018. 7. 22. 이전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G을 상대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3. 5. 9. “G은 원고에게 7,210,385원 및 그 중 6,999,640원에 대한 2013.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3차전6584)을 발령하였다. G이 원고에게 지급할 신용카드대금은 2021. 6. 1.자 기준으로 21,802,457원(=원금 6,999,649원 + 수수료 및 연체료 14,108,577원)이다.

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함)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8. 7.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F, G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 F 및 G은 2018. 8. 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F과 G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함)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8. 8. 접수 제12681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G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의 G에 대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살피건대, G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G은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G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G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관하여 망인의 처인 피고의 기여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양보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항변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시 G의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와 G 사이에 2018. 8. 6. 이 사건 부동산 중 G의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G의 2/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8. 접수제126819호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북구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7층 호 47.85제곱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동 소 대 33726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3726 분의 23.16

